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COVER STORY:  
한-EU FTA의 발효와  
새로운 협상의 시작! ..... 1

▶ FTA NEWS:  
한-미 FTA 더 이상 만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 2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특집 기획시리즈⑦  
수출입 세비 ..... 3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4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5

▶ WHERE IS GRACE CHANG?  
WHAT MATTERS MOST? 7

▶ ABOUT WRITERS ..... 7

## 한-EU FTA의 발효와 새로운 협상의 시작!

올해 25주년이 된 EUCCK는 산하에 28개 산업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27개 유럽연합회원국들의 대사관과 약 830여 개 유럽연합 및 국내의 기업체 회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지난 4년간의 한-EU FTA 협상기간 동안 EU 집행위원회 및 한국정부와의 직·간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협상의 기본 내용을 제공하고 양국간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분석, 서로의 이해를 도와 원만한 FTA 협상 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한-EU FTA 발효와 관련하여 EUCCK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 1. EUCCK 소개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이하 'EUCCK')는 27개 유럽연합회원국들의 대사관과 약 830여개 유럽연합 및 국내의 기업체 회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며, 산하에 28개 산업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EUCCK'는 국내외 EU·대한민국 기업들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호간에 유리한 기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년간의 한-EU FTA 협상기간 동안 EU 집행위원회 및 한국정부와의 직·간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협상의 기본 내용을 제공하고 양국간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분석, 서로의 이해를 도와 원만한 FTA 협상 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9월 1일부터 국내 최고 관세법인인 '신한관세법인'이 EUCCK의 공식 관세분야 상담 파트너가 되어 이제부터 FTA의 관세혜택을 누리게 될 EUCCK 회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한관세법인'도 한-EU FTA의 발효가 더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2. 한-EU FTA 발효의 최전선에서

한-EU FTA가 발효된 지도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EUCCK'는 지난 4년간의 한-EU FTA 협상기간 동안 EU 집행위원회 및 한국정부와의 직·간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협상의 기본 내용을

제공하고 양국간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분석, 서로의 이해를 도와 원만한 FTA 협상 타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었기에 국내외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이번 FTA 발효를 지켜보며 감개가 무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FTA의 발효시점이 다가오며 사실 발효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양국은 발효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도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FTA 발효이전 새로운 규제와 기준들이 도입되어 현실적으로 2년 전에 완료된 협정문이 현실과 상충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그 누구도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켜 협정문의 수정이나 발효의 연기를 야기하는 부담을 가질 수는 없었고, 그리하여, 새로운 문제는 FTA가 발효 이후 작업반을 통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3. 한-EU FTA 발효 후 3개월

한-EU FTA는 EU측에서 그 동안 중시해왔던 다자간 교섭 우선의 원칙에서 벗어나 최초로 양자간 무역협상을 시작하였다는 측면이 대두되며 협상초기부터 EU내에서 협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EU측에서 최초로 선택한 양자간 협상 대상국이자, 실제로 협상을 타결하여 그 결과가 발효된 최초의 상대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한-EU FTA의 성공적인 발효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을 자극하여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되거나 공개적으로 요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가 갖는 또 하나의 큰 의의는 양국이 국제적인 기준을 공통 기준으로 인정함에 따른 기업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공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 동안 많은 EU의 기업들을 포함한 해외의 기업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써 유럽의 기업과 유럽 각국의 공무원들을 대하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일관성 없는 법규의 적용과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 및 상품에 대한 그들 나름의 이유 있는 적대감이었습니다.

한-EU FTA 발효는 이런 수많은 비관세 문제들을 논의하고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양국의 협상대표들과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협상과 관련하여 7월 1일 이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4. 한-EU FTA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사실 FTA가 발효되면서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첫 번째 관심은 관세철폐가 가져오는 상품가격의 인하에 집중되었습니다. 발효를 한두 달 앞두고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문의들 중의 대부분은 역시 '당장, 7월 1일부터 그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인하되어 판매가 되는가?'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통관을 담당하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일선기업의 담당자들과 임원들은 이 단순한 질문이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로 비관세 부분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저역시도 이번 FTA를 통해서야 비로소 제가 쉽게 구입하는 모든 상품들이 실제로는 수출, 운송, 수입, 통관 등 얼마나 많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가들의 업무를 거쳐야만 상품 진열대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주변 정황을 설명하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나면, 어김없이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인하하게 되는 것이죠?'라고...

실제 일부 기업은 FTA 이전 관세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상품의 가격을 7월 1일부터 즉시 인하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반면 어떤 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으로 원산지 규정의 의무나 통관에 대한 큰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격인하 계획을 발표했다가 막상 FTA가 발효되고 나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양국간의 동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 Code가 불일치하거나 특정 Code를 지정하지 못하여 동일품목에 다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양국 간 상품에 대한 이해가 달라 FTA의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도 속속 발견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문제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 유럽의 역외 3대 무역국가로서 유럽연합에게 있어서 한국과의 FTA는 현재도 발전적 논의가 진행중이고, 한-EU FTA는 앞으로 이어질 EU의 양자간 협상의 기본 참고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한 문제점은 새로운 제도의 시작 후 더 큰 성장을 위한 성장통으로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FTA의 발효는 이제 협상의 마지막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협정문을 조금씩 고쳐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며 끝맺고자 합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자동차위원회

이사 박 상 도

[elcoreano@hanmail.net](mailto:elcoreano@hanmail.net)

## FTA News

# 『한-미 FTA』,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 FTA는 2007.4.2일 타결되어 2011.6.3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1.9.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의해 직권상정되어 현재 국회비준 절차가 진행중이다. 금년 7월 발효된 한-EU FTA와 함께 한-미 FTA 역시 거대경제권 국가와의 FTA이기 때문에 수출입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리 한-미 FTA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한-미 FTA의 협상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다른 FTA와는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구분	한-칠레	한-싱	한-ASEAN	한-인도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
발급방식	자율 발급	기관 발급	기관 발급	기관 발급	자율발급	자율 발급	기관발급 (발효 후 5년) -> 자율발급	자율발급, 포괄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발급 기관	발급 기관	발급 기관	수출자 (치즈예외)	인증 수출자	수출자 및 생산자 (자율증명)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C/O 유효기간	2년	1년	6개월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영어사용원칙(단, 미국, EU의 경우 계약국의 언어사용 가능)							

<참조자료-FTA 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교>

우리정부는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한-미 FTA를 지속 검토해왔다. 한미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양국간 통상협약에 대해 꾸준히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타 FTA 준비과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한-미 FTA 발효 시 양국 수출입자들은 관세혜택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및 발급하도록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에 신속 정확히 대처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이 몇 가지 중요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1.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식은 필수사항만 기재하면 그 형식에 구애 받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간 지속된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타 FTA와 달리 원산지문구 또는 양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내법령에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표준양식을 제정하여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양식 채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 협정 상 필수기재사항

-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정보, 증명인의 성명
-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 HS CODE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
- 증명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에 한함)

#### 2. 원산지증명서 반복사용(원산지 포괄증명)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선적,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선적일 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복수의 수출입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한-미 FTA에서는 타

FTA 와 달리 적용품목 중 자동차 분야에 별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산지 규정시 미측이 선호하는 순위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직접법을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즉,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공제법·직접법·순위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순위가는 총비용에서 "판촉·마케팅·판매 후 서비스·로열티·운송·포장관련 비용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수출입자는 FTA 적용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FTA 가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검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의 원산지검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내 수출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 섬유·의류상품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국내 수출자의 원산지를 조사하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여부를 사후검증 및 조사하는 원산지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업무매뉴얼 구축 및 올바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⑦

# 수출입 세비(稅費)

지금까지는 중국해관의 수출입통관절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부터는 중국해관의 수출입 관세와 제세(세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출입 세비 개요

수출입 세비는 수출입단계에 있어서 해관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세비를 말한다. 수출입세비를 징수하는 법률근거로는 《해관법》과 《관세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가 있다. 이 밖에도 해관에서는 선박톤세도 대신 징수하고 있다.

## 1. 관세

관세는 해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관세정책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을 허가한 화물과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거래세(流转税)이다. 관세는 국세로, 징수주체는 국가이다.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며, 과세대상은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과 물품이 된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화물의 수하인과 수출화물의 송하인, 국경반출·입 물품의 소유자가 된다. 관세는 국내경제를 보호하고, 재정정책을 실시하며,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수출입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수단이 된다.

## 가. 수입관세

### 1) 부과대상

수입관세는 해관이 국경을 진입하는 화물과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징수하는 관세를 말한다.

### 2) 부과징수 방법

수입관세의 부과징수방법으로는 증가세와 종량세, 복합세, 활준세 등이 있다. 증가세는 화물과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이 화물가격에서 차지하는 백분비율을 세율로 한다. 가격과 세액이 정비례하는

관세이다.

증가세는 중국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세금계산(부과) 표준이다. 중국에서 징수하는 수입관세는 대부분 증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종량세는 화물과 물품의 계량단위(예: 종량, 수량, 용량 등)를 부과표준으로 하여 매 계량단위에 따라 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관세를 말한다. 중국은 현재 냉동 닭, 석유원유, 맥주, 카메라필름 등 수입상품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다.

복합세는《수출입세칙》중 하나의 세목에 있는 상품이 동시에 증가세나 종량세 두 가지 표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 시 두 종류의 세금 합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중국은 현재 비디오카메라, VTR, 영사기, 비가정용 촬영녹화 일체기, 일부 디지털카메라 등 수입상품에 대해서 복합관세를 징수한다.

활준세는《수출입세칙》중 사전에 제품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제정하고, 그 후에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입세율을 가감하는 형식의 관세이다. 상품가격이 폭등하였을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채용하고, 상품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채용한다. 이러한 목적은 상품의 국내시장가격을 안정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관세할당 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면화(HS: 5201.00-00)에 대해서는 5%~40%의 활준세를 실행하고 있다. 활준세율이 5%보다 낮은 수입 면화에 대해서는 0.570 원/kg 에 따라 종량세를 계산한다. 활준세의 잠정 관세율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면화의 과세가격이 11.397 원/kg 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0.570 원/kg 에 따라

종량세를 부과 징수한다.

② 수입면화의 과세가격이 11.397 원/kg 보다 낮을 경우에는 잠정관세율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R_i = 8.686/P_i + 2.526\% \times P_i - 1$$

위의 식 계산결과에 대하여 4 사 5 입한 후 소수점 3 자리까지 보류한다. R<sub>i</sub> 는 치환산한 잠정관세율이며, 40%보다 높을 때는 40%만 취한다. P<sub>i</sub> 는 관세과세가격이며, 단위는 원/kg 이다.

## 3) 수입관세의 종류

수입관세는 수입정세와 수입부가세로 나뉜다. 수입정세는《수출입세칙》중의 수입세율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이다. 수입부가세는 국가가 특정한 수요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정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세이다. 수입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일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반덤핑관세, 반보조금관세, 보장조치관세, 보복성관세 등 특별 관세를 포함한다. 세계무역기구가 회원국이 일반 상황에서 마음대로 수입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지 세계무역기구의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 등 관련규정에 부합될 경우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외국상품의 덤핑수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국내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수입부가세이다. 즉, 덤핑상품이 수입될 때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반덤핑관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다. 중국의 《반덤핑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상품이 그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중국에 수출되고, 중국의 관련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조성될 때에는 덤핑으로 본다. 반덤핑관세는 해관에서 책임지고

징수한다. 그 세액은 덤핑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이 현재 징수하는 수입부가세는 대부분 반덤핑관세이다. 이밖에, 타국이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차별성 관세 또는 대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상응하는 보복성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관세조례》규정에 어떠한 국가 또는 지구라도 중화인민공화국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하는 무역협정 및 관련 협정을 위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무역방면에 있어서는 금지, 제한, 관세부과 또는 기타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국가 또는 지구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보복성관세를 징수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보복성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복성관세를 징수하는 화물, 적용국가, 세율, 기한과 징수 방법 등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포한다.

#### 나. 수출관세

수출관세는 해관이 출경하는 화물·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징수하는 관세이다. 수출관세를 징수하는 목적은 일부상품의 과도하고 무질서한 수출을 제한·통제하고, 특히 본국의 중요한 자연자원과 원재료의 무질서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소수의 상품에 대해서만 수출세를 징수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증가세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아직까지 일정시기 내에 일부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일시 수출잠정관세를 징수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서로 다른 수출잠정관세율을 적용 또는 특별수출관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관세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화물은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법률과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 수출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상 투자기업이 수출하는 과세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출관세를 징수한다.

#### 다. 일시허가 수출입 화물의 수출입관세

일시 수출입허가 화물(즉, 《관세조례》제 42 조 제 1 항에서 열거된 범위 이외의 기타 일시허가 수출입화물)은 해관의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 관련규정과 해관이 이 화물신고를 접수한 수출입일자에 적용되는 환율, 세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 월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화물이 반송 또는 재 반입될 때 세금을 징수한다. 일시허가 수출입화물이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까지 다시 반송 수출되지 않거나 재 반입되지 않을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 해관에

신고하여 수출입 및 납세수속을 밟고 잉여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한은 60 개월로 한다. 1 개월에 부족하나 15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 개월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15 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한은 화물면허(放行)일로부터 계산한다. 월별 세금징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매월 관세액 = 관세총액 × (1 ÷ 60)

매월 수입단계 대신징수 세액 = 수입단계 대신징수 총액 × (1 ÷ 60)

#### 관세청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부과 종료 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연장 또는 종료될 수 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진행일지

코스모화학주식회사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2010.08.31)하였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 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및 최종 판정하였음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2011.09.02)함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입항 후 30 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통관을 통한 물가안정 도모하고자 함이다.

##### 개정내용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 관세청장 공고하는 물품으로



기재부·농림부 등 할당품목 추천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11 개 품목

①돼지고기 ②닭고기 ③냉동고등어 ④분유 ⑤치즈 ⑥배추 ⑦무 ⑧바나나 ⑨파인애플 ⑩밀가루 ⑪설탕

#### 시행시기

공고일(2011.09.09) 익일이후 입항반입 물품부터 적용한다.

#### □휴대품, 국제우편물 및 특송물품 수입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입안예고이유**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과세간이통관 대상물품의 금액기준을 한-EU FTA, FTA 관세특례법 등의 원산지증명 면제기준과 일치시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안예고 되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여행자휴대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 근거 신설
- 세관신고서 양식 개선
- 세관장 확인사항 관련 법률 등 개정 내용 반영

- 실무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고시 정비 등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신설
- (신청 주의) 간이통관신청서에 적용 신청 기재
- (원산지 확인) 국가가격 표시 구매영수증 등 및 현품의 원산지 확인
- 현장과세간이통관 대상 구매물품 금액 기준 상향 조정
- 미화 600 불 이하 물품 → 미화 1,000 불 이하 물품

- 개정 내용 반영 및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용어 수정 등 별지 서식 개정(제 2 호 서식 - 통관 안내서, 제 3 호 서식 - 간이통관 신청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소액물품의 FTA 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 확인방법 신설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물품" 추가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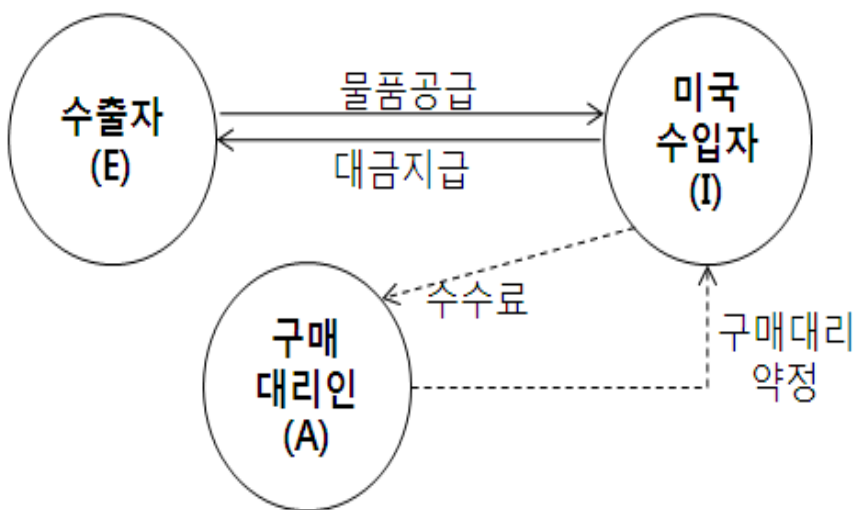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㉔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테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테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에게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특정 구매수수료의 과세 여부 (HQ545938 1996.06.05)**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거래사실(Facts)**

1. 수입자(I)는 구매대리인들(28 명)을 통해 여러 제조자로부터 신발,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고 있음

2. 구매 과정에서 주로 구매대리인이 공장을 선택하며, I 는 디자인 선택 등에 있어 제한된 권리만을 행사함

3. 그러나 I 는 자신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물품 수입에 있어 필수적인 지시와 통제는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4. I 는 구매대리인들과 구매 대리 약정(buying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 쟁점(Issue)**

I 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I 가 구매대리인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진정한 구매수수료(bona fide buying commissions)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가. 미국으로 물품 수입 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방법은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에 의한 평가'(관세법 19 U.S.C §1401a)이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가격'이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뜻하며, 운송, 보험을 위한 비용은 제외함. 진정 구매수수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함.

## 2.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가. 관련 판례

(1) J.C.Penny Purchasing Corp. 판례 (1978)

진정 구매수수료의 존재는 각 사안 별로 관련된 사실 관계에 달려있음.

(2) New Trends, Inc. 판례 (1986)

진정한 구매대리관계 또는 진정한 구매수수료 인지 여부의 입증 의무는 구매자에게 있음

(3) Dorco Imports 판례 (1971)

구매대리약정의 존재로 구매대리관계가 있음을 지지할 수 있음

(4) Rosenthal Netter 판례

진정한 구매대리관계의 존재 여부 결정을 위하여 구매자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살펴봐야 함.

(가) 대리인의 행동이 1 차적으로 구매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나) 구매자가 선적과 물품관리 및 그 비용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다) 구매자가 대리인 없이 물품을 제조자로부터 바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적인 영업을 한 것인지 여부

(마) 대리인이 제조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예규

(1) ruling HQ 543503 (1983.7.11)

U.S CORPORATION 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수입하고, 미국 내 주요 수입자들에게 구매 대리인 역할도 하였음. 비록 자신이 수입자 및 국내판매자가 되었지만 이는 진정 구매대리인이라는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2) ruling HQ 544958 (1992.6.8)

거래 당사자간 관계나 사업은 진정한 구매대리 관계를 결정짓지 못함. 대신 이러한 의문들은 제출된 증거로 해결이 됨.

이와 유사하게 ruling 544945 (1995.6.30)와 ruling 545794 (1995.8.9)에서는 대리인이 여러

소매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인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함

## 다. 28명 중 9 번째 대리인(A1)에 대한 분석

(1) A1 은 I 가 구매하는 신발류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소유하지 않고, 디자이너를 고용하지도 않으며, 본질적인 디자인을 제공하지 않음.

(2) I 가 비록 실제로 공장과 협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제조자 선정에 본질적으로 관여함

(3) L/C 는 A1 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여기서 수수료, 핸들링 차지 등을 공제하지 못함. I 와 외국 공급자 사이의 거래서류(인보이스 등)에도 A1 의 수수료가 포함되지 아니함.

(4) I 는 A1 이 없더라도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5) 특히, A1 의 서비스는 구매가능성의 조사, 시정정보 및 샘플획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I 가 직접 견적을 보고 발주를 하고, 대금 지급도 공급자에게 직접하였으며 배송도 공급자로부터 바로 받았으므로, A1 은 구매계약중 어떠한 조건에 대하여도 변경할 수 없음.

(6) A1 은 자신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독립적 사업을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거나 소유권을 넘겨 받지 아니함.

비록 A1 이 독립적인 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하더라도, 이는 I 와 A1 간 거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거래임

(7) A1 은 통상적인 구매대리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I 가 A1 을 컨트롤 함.

따라서 A1 은 I 의 진정 구매대리인 임.

## 라. A1 이외의 구매대리인들의 경우

A1 이외의 대리인들에 대하여는 불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진정한 의미의 구매대리인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 짓기 어려움

(1) 제출된 구매대리 약정에 주장된 대리행위가 어떻게 제정될 것인지, 주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의 나와 있지 않음. 어떤 경우에는 수입 물품 조차 약정에 나와 있지 않음.

(2) 디자인에 대한 구매대리인(주장)의 역할이 확정적이지 않음.

(3) A1 을 제외한 다른 대리인들과는 발주서, 송장, 지급증빙과 같은 거래 서류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서류 없이는 I 의 실질적인 통제 능력을 파악할 수 없음

(4) I 에게 구매대리인들(주장)은 수입자, 국내구매자로 행동하였고 종종 자신의 재고에서 판매하기도 했음. 또한 몇몇의 대리인은 공급자와 특수 관계가 있거나 그에 의해 공급자의 주요 판매가 결정되었음

(5) 따라서 A1 을 제외한 다른 대리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구매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음.

## □ 결정(Holding)

1.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하여 볼 때, I 가 A1 에 지급한 비용은 진정한 의미의 구매수수료를 구성하며, 따라서 A1 에게 지급된 비용은 수입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2. A1 이외의 대리인들이 진정한 구매대리인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충분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임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식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 WHERE IS GRACE CHANG?

## What Matters Most?



장승희  
대표 관세사

한 일간지의 주말섹션에는 다양한 인터뷰 기사들이 실립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인터뷰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What Matters Most' 입니다. '가족', '和', '아버지' 자신의 아들 딸' '정체성' 등 여러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답변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상사 또는 동료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경쟁자와의 관계 등등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이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소중한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cover story 는 유렵계 기업들과 한국 정부 및 사회간에 성공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 장을 마련하고 있는 EUCCK(한국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EU FTA 의 성공적인 발효를 위해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과 다른 FTA 와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한은 EUCCK 의 Customs Adviser** 로서 EUCCK 의 회원사들이 관세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FTA News 는 양국의 국회 비준을 기대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다른 FTA 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임창환 부산국제우편세관장께서 중국특집으로 연재하고 계시는 Voices from the Fields 에서는 이번 호부터는 중국해관의 수출입관세와 제세에 대하여 시리즈로 설명을 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미국 관세청 예규로 알아보는 관세평가에서는 **'특정 구매수수료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럽 발 경제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고 환율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견인역할을 하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시대에는 한 나라의 어려움이 그 나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27 개의 국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경제상황은 멀리 한국의 주식시장을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즉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노력이 타인을 웃게 만들 수 있다면, 신한의 작은 노력이 고객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들에서 성공을 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며 일교차도 매우 심한 날들입니다. 고객 여러분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 분들의 건강도 보살펴주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 ABOUT WRITERS

## COVER STORY -

한-EU FTA 의 발효와 새로운 협상의 시작!



박 상 도 이사  
([elcoreano@hanmail.net](mailto:elcoreano@hanmail.net))

## PROFILE

- 現)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자동차위원회 이사
- 現 FTA 후속조치방안연구위원회 자문위원
- 환경부장관 표창
- FTA 자동차분야 협상 및 환경 개선

## FTA News-

한-미 FTA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 경 관세사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②  
수출입 세비



임 창 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 PROFILE

- 現) 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 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 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 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최 지 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 US Rulings 연재②

특정 구매수수료의 과세여부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